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농림축산식품부

KFRI

한국식품연구원

1. 통관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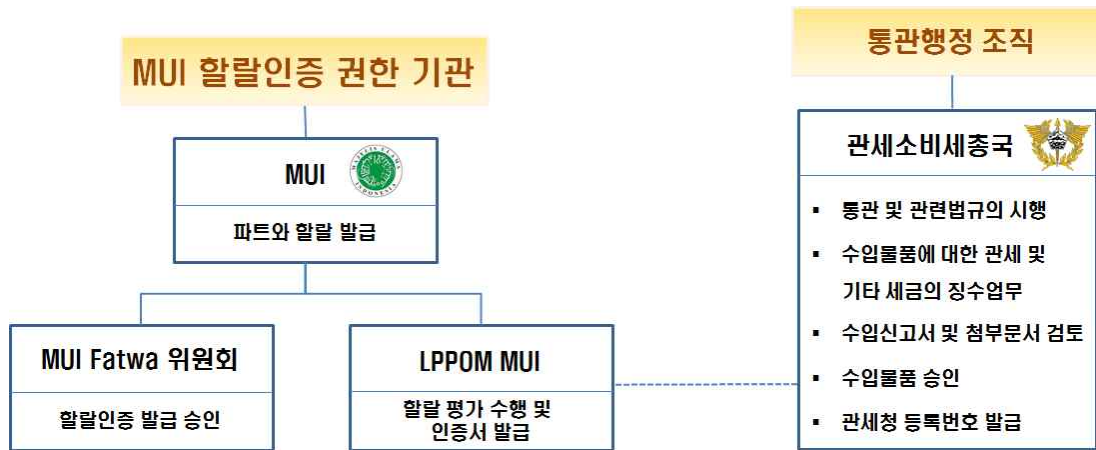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는 수입신고 전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 통관 사후 심사 (Post Auditing)’ 를 원칙으로 함.
 - 수입통관이 완료된 제품의 수입 신고서는 관할 본부 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신고내용이 재검토 됨.
 - 검토 과정 중 부적절한 관세율 적용이나 수입가액이 있을 경우, 추가로 관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 심사(auditing)를 실시하기도 함.
 - 심사를 대비하여 업체는 통관된 수입신고서, 선적서류, 수입가격 입증 자료 등 서류들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어야 함.

〈표 1〉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일반정보 요약

세 관 정 보	
문서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도착의 공식적인 통지는 반드시 국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선적 서류의 원본은 PP19 양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에 대한 도착 청구서 - 공항에 대한 항공화물 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 상업 송장 - 물품 목록 - 식품에 대한 피토-위생 증명서
통상 금지	N/A
금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3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예시: 마약, 무기 등) • 의학, 군사 방어 등 이러한 항목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허가될 수 있음
일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금지는 2004년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설탕, 소금 및 쇠고기와 같이 제한된 수입할당제도가 적용된 다른 식품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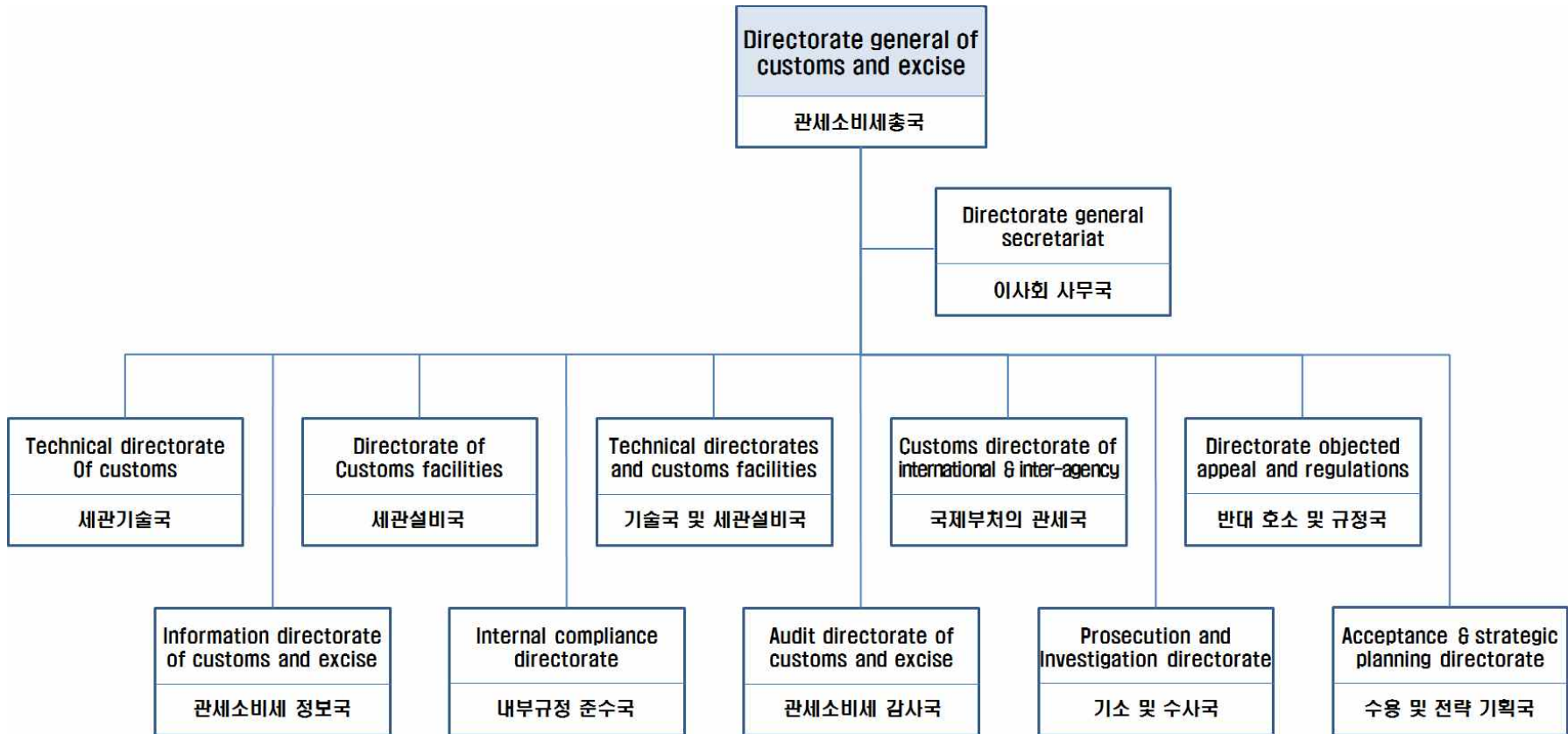
※ 자료: Digital Logistics Capacity Assessments, 1.3 Indonesia Customs Information
(인도네시아 통관 정보)

2.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정부기관



<그림 1>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주요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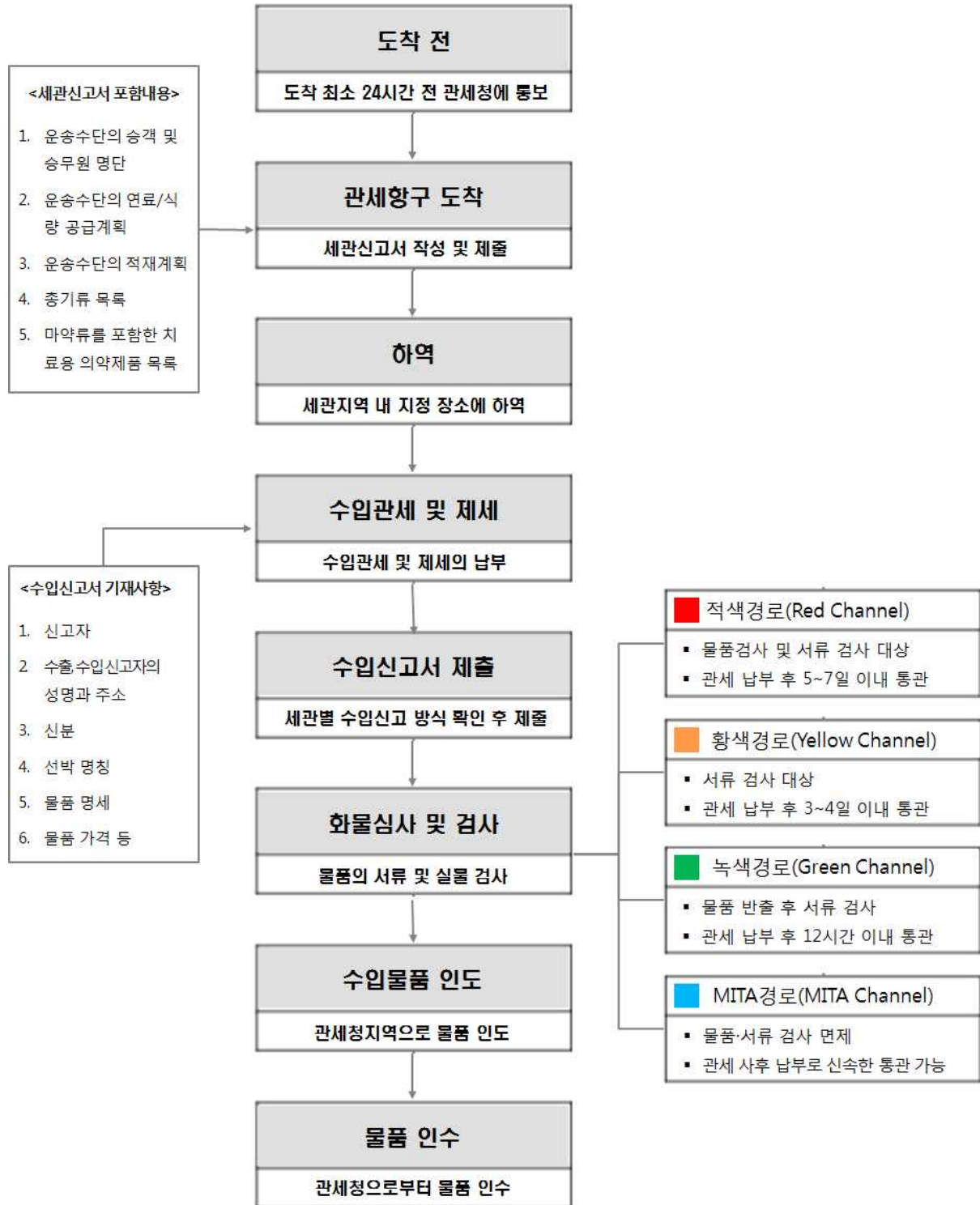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 직속기관으로 16개의 본부세관을 비롯하여 총 140여개의 세관을 두고 있음.
- 관세소비세총국(DGCE)의 조직 구조는 10개의 업무국(Directorate)과 그 산하국, 그리고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관기술국(6개 산하국)
 - 세관설비국(5개 산하국)
 - 기술국 및 세관설비국(4개 산하국)
 - 국제부처의 관세국(5개 산하국)
 - 반대 호소 및 규정국(4개 산하국)
 - 관세소비세 정보국(4개 산하국)
 - 내부규정 준수국(4개 산하국)
 - 관세소비세 감사국(4개 산하국)
 - 기소 및 수사국(6개 산하국)
 - 수용 및 전략 기획국(3개 산하국)
- (주요 임무)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 등 관세 및 소비세 관련 정책과 기술 시스템을 설립 및 집행함.



<그림 2> 관세소비세총국(DGCE) 조직구조

※ 자료 : DGCE 공식 웹사이트, 조직구조, <http://www.beacukai.go.id/arsip/abt/struktur-organisasi.html>

3. 인도네시아 통관절차



<그림 3> 인도네시아 통관절차 흐름도




1) 도착 전

- 제품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 운송사는 관세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

도착예정 통보 시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 운송수단 식별번호 • 운송수단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 직전 최종 기착지·목적항 • 운송수단 도착 예정일 • 하역예정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 다음 목적항
-----------------------	---

2) 관세 항구 도착

- 관세 항구 도착 시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이는 운송수단에 따라 도착시간으로부터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상이함으로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함.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선박	 항공기	 육로
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도착 즉시

세관신고서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한 치료용 의약품 목록
----------------	--

3)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함.
-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을 수기 또는 전자목록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4)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와 관세청이용자요금을 함께 준비함
- 단,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함.

수입신고서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 수출·수입·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 신분 • 선박 명칭 • 물품 명세 • 물품 가격 등
----------------	---

- 한-ASEAN FTA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관세율 항목에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에도 AK-FTA용으로 구비해야 함.
- Tanjung Priok항 및 Soekarno-Hatta 공항과 같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세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세관에서는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하거나 관세청 서비스 사무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함.
- 관세액 산정은 수입 물품의 비용, 운송비용, 보험 비용을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 기준이며,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와 관련한 요율¹⁾은 다음과 같음:

1) www.tarif.depkeu.go.id/Tarif/Eng 에서 수입관세율과 HS코드 확인

<표 2>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관련 요율

구분	기준 및 요율
수입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0.89%의 관세율로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40%로 다양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관세 = 수입관세요금 × CIF</div>
부가가치세 (V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의 표준비율로 수입에 부과되거나 CIF값과 관세 합이 0~5%의 감소된 비율로 부과됨.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다양하며 측정 단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부가가치세 = 10% × (CIF+수입관세)</div>
사치품 판매세 (STL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이 해당되며, 제품의 유형에 따라 CIF값과 관세 합이 10~75% 비율로 적용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치품 판매세(STLG) = 10~75% × (CIF+수입관세)</div>
소득세 (P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수입업자의 경우 2.5%, 미등록 수입업자의 경우 7.5%가 적용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소득세 = 2.5% 혹은 7.5% × (CIF+수입관세)</div>

※ 자료: 1. INDOSIGHT, Calculate your Import Tax and Custom Duty, <http://www.indosight.com/blog/calculate-your-import-tax-and-custom-duty/>
 2. PT Prima Wahana Caraka(a member firm of PwC network),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5) 수입신고서 제출

- 수입신고는 통관 세관에 따라 수입신고 방식(EDI, 전자서류, 서류)이 상이함으로 사전에 신고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Tanjung Proik I, II, III 세관과 Soekarno-Hatta I - II 세관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며, 기타 세관은 서류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함.
- 세관에서는 전송 받은 서류를 근거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교신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함. 수입 세금 납부가 확인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며, 수입신고서 접수가 확인되면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함.
 -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는 세관내규에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함.

- 4시간 이내에 PIB의 접수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어느 반출 통로(Channel of Release)로 결정 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통보 받음.
 - 만약 세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가 명시됨.
- 세관은 세관 내부 DB자료, 온라인 마켓 판매가, 시장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 가격을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5%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음.

6) 화물심사 및 검사

-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 문서들을 검토함.
 -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화물 검사 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관세 적용 물품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물품, 공공에 위험한 물품, 블랙리스트(Blacklist)상의 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적으로 실시함.
- 과거 수입자의 정보, 수입물품과 기타 정보의 위험도에 따라 4가지의 Channel로 분류하여 심사함.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 통관을 허락하고 화물 출고 동의서가 발급됨.
- 화물 출고 동의서를 물품 창고에 제출 후 창고 비용을 지불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함.

〈표 3〉 Channel별 심사 관련 주요내용

Channel 구분	주요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ackground-color: red; margin-right: 5px;"></div> <div> <p>적색 경로 (Red Channel) : 고위험 업체</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검사 및 서류 검사 대상이 되며, 검사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함. 관세 납부 후 통상 5-7일 이내에 통관 됨. (지정기준) 신규 수입자 및 고위험 신용보유자, 고위험 품목 수입자 등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ackground-color: orange; margin-right: 5px;"></div> <div> <p>황색 경로 (Yellow Channel) : 위험 업체</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검사는 하지 않지만 서류 검사 대상이 됨. 관세 납부 후 통상 3-4일 이내에 통관 됨. (지정기준) Red Channel 지정 후 1년간 관세법규 위반사실이 없으며 우수 수입 실적 보유

〈표 계속〉

Channel 구분	주요내용
<p>■ 녹색 경로 (Green Channel) : 우수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반출 후 서류 검사가 진행됨. • 관세 납부 후 12시간 이내에 통관 완료됨. • (지정기준) Yellow Channel 지정 후 3개월간 관세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p>■ MITA 경로 (MITA Channel) : 최우수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검사, 서류심사 둘다 면제됨. • 관세는 사후납부가 가능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고위험 물품 등은 서류심사 후 통관). • 관세 유예 여부에 따라 Priority Channel업체 및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됨. • (지정기준) Internal Control System과 신용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관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즉,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 분야가 명확하고 특화되어야 함. 이 조건을 갖추어 관세청에 신청을 해야 함.

7)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의 승인 후 수입된 물품이 인도되며, 수입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 외에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3 근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8) 물품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대 2개월의 기간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대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통관절차 시 주의사항

- 통관절차 시 구비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될 시 바로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함.
-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의 일치 및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의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확한 품명 기재도 필수적임.
 - 이러한 내역들이 불일치되거나 부정확할 시 통관보류 또는 정정 대상이 됨으로 주의를 요함.
- Channel 분류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업체의 **재정능력 및 신용도**임으로 가능한 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Red Channel의 경우, 통관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Yellow Channel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관세법규 위반 내지 각종 신고오류를 범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Red Channel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관에서 Channel 분류 실사 시, 가능한 한 많은 회계자료를 보여주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인도네시아는 수입통관 시 “선 통관 사후 심사(Post Auditing)”가 원칙임으로 수입신고 후 물품이 반출되었다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수입신고 시 법규위반 내지 신고오류는 수입업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신용데이터에 따라 수입자를 차별 관리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와 투자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어에 능통한 직원이나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함.

[부록 1] 인도네시아 항구 및 공항

-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함.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 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 항(두마이), Teluk Bayur 항(빠당), Tanjung Priok 항(자카르타), Padang Bai 항(발리), Jaya Pura 항(빠뿌아)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삐켄바루)

- 2013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다음의 5개 항구 혹은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함.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 Belawan 항구(메단)
 -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이 항구는 식음료 분야만 수입 허용